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35
----------	-------

발의연월일 : 2025. 11. 20.

발 의 자 : 정점식 · 박충권 · 박덕흠
인요한 · 서천호 · 조지연
김정재 · 김태호 · 정희용
김도읍 · 김성원 · 신성범
김장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리와 통은 각각 읍·면과 동의 하부조직으로서, 통장과 이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주민의 민원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행정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장과 이장의 법적 근거가 없어 활동수당이나 복리 지원이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아울러, 각 지역에서 통장·이장 간의 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연합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통장과 이장의 설치 근거와 임무, 임명 절차 등을 명확히 하

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수당, 각종 지원 및 보상금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장과 이장이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통장·이장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4까지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2(통장·이장) ①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통장·이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업무 지원
2.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지역 봉사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통장 및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 임명한다.

④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 제3항에 따라 통장·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통장·이장은 주민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장·이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4조의3(통장·이장에 대한 수당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장·이장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수당, 회의·교육 참석에 따른 여비·식비, 업무 관련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장·이장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우수활동 포상금 및 역량강화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장·이장이 업무 수행 중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직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활동수당, 각종 지원 및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4조의4(통장·이장연합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통장·이장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통장·이장연합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통장·이장연합회가 지역 행정과 주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비, 교육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통장·이장연합회 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4조의2(통장·이장) ① 행정</u> <u>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행정</u> <u>리에는 이장을 둔다.</u> <u>② 통장·이장은 다음 각 호의</u> <u>임무를 수행한다.</u> <u>1. 읍장·면장 또는 동장의 업</u> <u>무 지원</u> <u>2.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u> <u>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u> <u>진과 지역 봉사 등 해당 지방</u> <u>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u> <u>항</u> <u>③ 통장 및 이장은 주민의 신</u> <u>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u> <u>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u> <u>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 또는</u> <u>동장이 임명한다.</u> <u>④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 제</u> <u>3항에 따라 통장·이장을 임명</u> <u>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u> <u>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u> <u>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u>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u>

<신 설>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의 동의가 있는 경우 통장·이
장은 주민 중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
우 통장·이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
원회법」에 따른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4조의3(통장·이장에 대한
수당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통장·이장의 업무
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수당, 회의·교육 참석에
따른 여비·식비, 업무 관련 교
통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
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장
·이장의 사기 진작과 복리 증
진을 위하여, 우수활동 포상금
및 역량강화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장
·이장이 업무 수행 중 상해를

<신 설>

입거나 사망한 경우, 그 직무와
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보상금
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활
동수당, 각종 지원 및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과 절차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4조의4(통장·이장연합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통장·이장 상
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통장·이장연합회를 둘 수 있
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의 통장·이장연합회가 지역
행정과 주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비, 교육비 등 필요
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통
장·이장연합회 조직을 지원하
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
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